

외 교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급]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수신 : 전 재외공관장

사본: 각 실,국(과,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해외입국관리팀장), 질병관리청장(검역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북방통상총괄과장, 미주통상과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제협력과장), 국토교통부장관(국제항공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차관보, 1차관, 2차관, 장관, 청외교, 청안보, 청위기상황

발신 :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

연호 : 영사서비스과-75236(2020.12.29.)

1. 연호 관련,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30. 및 1.4.자 별첨 공문을 통해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음.

ㅇ 주요 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절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를 지정하여 외교부에 공문 통보 시, 해당 재외공관은 통보일 익일부터 3 주간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 ※ 상기 기간 중 신규 발급은 중지되나, 중지 시행일 전날까지 이미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 유지
- (공통 예외 사유)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 *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 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예외 사유로 불인정
 - **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 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 상기 공통 예외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조치를 이미 시행 중인 영국, 남아공에도 동일 적용

- (추가 예외 사유) △신속통로 6개국(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UAE) 및 필수입국 합의국(독일), △미국은 아래 범위 내에서 추가 예외 적용
 - · (신속통로 국가 및 필수입국 합의국) 협정 또는 합의 내용에 한해 예외 적용(상 호주의를 전제로 격리면제 유지)
 - · (미국) 신속통로 국가에 준하여 주요 기업인에 대한 예외 적용(상세 내용은 아래 항목 2. 참조)
- 2. (아래 39개 국가·지역 관할 공관)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자 별첨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절차 적용 대상 국가·지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귀관 업무에 적용 바람.
 - 이 대상 국가·지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레바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타, 미국,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요르단,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잠비아, 중국, 칠레, 캐나다, 태국, 터키, 파키스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UAE
 - ※ <u>방대본 공문 접수 후 공관에서 보고한 2개국(그리스, 사이프러스) 포함(중수본 및</u> 방대본 측과 협의 완료)
 - ㅇ 발급 중지 기간 : 2021.1.5.~1.25.(추후 연장 가능)
 - ※ 영국 및 남아공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2021.1.17.까지 적용(추후 연장 가능)
 -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WE, 독일) 신속통로 및 필수입국합의 국가인바, 협정 또
 는 합의 내용으로 예외 적용(상호주의를 전제로 격리면제 유지)
 - (미국) 신속통로 국가에 준하여 주요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 중지 예외 적용
 - * 임원급, 엔지니어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으로서 아래 격리면제서 발급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격리면제서 발급 인정 사유
 - ・계약 및 약정 체결(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 ·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증빙서류 제출 必)
 -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 ·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해당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해당 주한공관에는 필요 시 지역과에서 통보 예정이며, 귀관에서는 공관 홈페이지 공지,
 필요 시 귀 주재국 측 통보 등 적의 안내 바람.

붙임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끝.

외 교 부

수신자 주가나대사, 주가봉대사, 주고베총영사, 주과테말라대사, 주광저우총영사, 주나고야총영사, 주나이지리아대사, 주라고스분 관장, 주남아공대사, 주네덜란드대사, 주네팔대사, 주노르웨이대사, 주뉴욕총 클랜드분관장, 주니가타총영사, 주니카라과대사, 주다롄출장소장, 주덴마크대사, 주도미니카대사, 주독일대사, 주본분관장, 주 사, 주라오대사, 주라트비아대사, 주러시아대사, 주레바논대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주루마니아대사, 주르완다대사, 주리비아대사, 주마다가스카르대사, 주말레이시아대사, 주멕시코대사, 주모로코 대사, 주모잠비크대사, 주몬트리올총영사, 주몽골대사, 주뭄바이총영사, 주미얀마대사, 주미국대사, 주밀라노총영사, 주바레인대한민국대사, 주바르셀로 나총영사, 주방글라데시대사, 주밴쿠버총영사, 주베네수엘라대사, 주베트남대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주벨라루스대사, 주보스턴총영사, 주볼리비아 대사, 주불가리아대사, 주브라질대사, 주브루나이대사,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주사우디대사, 주삿포로총영사,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 주상파울루 총영사, 주상하이총영사,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주선양총영사, 주세네갈대사, 주세르비아대사, 주센다이총영사, 주수단대사, 주스리랑카대사, 주스웨덴 대사, 주스위스대사, 주스페인대사, 주라스팔마스분관장, 주슬로바키아대사, 주시드니총영사, 주시안총영사, 주시애틀총영사, 주앵커리지출장소, 주시카 고총영사, 주싱가포르대사, 주아랍에미리트대사, 주아르헨티나대사, 주아세안대사, 주아일랜드대사, 주아제르바이잔대사, 주아프가니스탄대사, 주알마 티총영사, 주알제리대사, 주앙골라대사, 주애틀랜타총영사, 주에콰도르대사, 주엘살바도르대사, 주영국대사, 주예멘대사, 주오만대사, 주오사카총영사, 주오스트리아대사, 주오이시디대사, 주온두라스대사, 주요르단대사, 주요코하마총영사,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 주우루과이대사,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주우크라이나대사, 주우한총영사, 주유네스코대사, 주유엔대사,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장, 주이라크대사, 주아르빌분관장, 주이란대사, 주이르 쿠츠크총영사, 주이스라엘대사, 주이스탄불총영사, 주이집트대사, 주이탈리아대사, 주인도대사, 주인도네시아대사, 주일본대사, 주자메이카대사, 주말라 보분관장, 주제네바대사,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 주트빌리시분관장, 주중국대사, 주짐바브웨대사, 주체코대사, 주첸나이총영사, 주칠레대사, 주칭다오총 영사, 주카메룬대사, 주카자흐스탄대사, 주카타르대사, 주캄보디아대사, 주시엠립분관장, 주캐나다대사, 주케냐대사, 주코스타리카대사, 주코트디부아르 대사, 주콜롬비아대사, 주DR콩고대사, 주쿠웨이트대사, 주크로아티아대사, 주키르기즈대사, 주타이베이대표, 주타지키스탄대사, 주탄자니아대사, 주태 국대사, 주터키대사, 주토론토총영사,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 주튀니지대사,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주파나마대사, 주파라과이대사, 주파키스탄대사, 주카라치분관장, 주파푸아뉴기니대사, 주팔레스타인대표사무소장, 주페루대사, 주포르투갈대사, 주폴란드대사, 주프랑스대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주피지대사, 주핀란드대사, 주필리핀대사, 주세부분관장, 주함부르크총영사, 주헝가리대사, 주호놀룰루총영사, 주하갓나출장소장, 주호주대사, 주멜번분 관장, 주호치민총영사, 주홍콩총영사, 주후쿠오카총영사, 주휴스턴총영사, 주댈러스출장소장, 주히로시마총영사, 주청두총영사, 주다낭총영사, 주에티오 피아대사, 주발리분관장,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외교사절담당관, 인사기획관,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재외공관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동북아1과장, 동북아2과장, 북미1과장, 북미2과장, 남미과장, 중미카리브과장, 중남미협력과장, 서유럽과장, 중유럽과 장, 중동1과장, 중동2과장, 원자력외교담당관, 군축비확산담당관, 유엔과장, 인권사회과장, 국제안보과장, 개발정책과장, 개발협력과장, 다자협력인도지 원과장, 국제법규과장, 조약과장, 영토해양과장,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정규범과장, 지역경제기구과장,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장,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북핵협상과장, 북핵정책과장, 평화체제과장, 대북정책협력과장,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 국립외교원장(교육운영과장), 국립 외교원장(직무연수과장), 국립외교원장(외국어교육과장), 국립외교원장(연구행정과장), 국립외교원장(기획협력과장), 국립외교원장(외교역량평가과장), 혁신이행팀장, 언론담당관, 감찰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공공외교총괄과장, 유네스코과장, 문화교류협력과장, 재외동포과장, 여권과장, 재외국민보호과장, 재외국민안전과장, 해외안전지킴센터장, 외교통신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외교정보보안담당관, 동남아1과장, 아세안협력과장, 아태1 과장, 아태지역협력과장, 수출통제제재담당관, 국립외교원장(운영지원과장), 동북아협력과장, 동남아2과장, 아태2과장, 연계점검팀(협조문게시), 아프리 카1과장, 아프리카2과장, 유라시아1과장, 유라시아2과장, 2021년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준비기획단장, 전략조정담당관, 정책공공외교1과장, 정책공공외 교2과장, 에너지과학외교과장, 기후변화외교과장, 녹색환경외교과장, 2021년P4G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 한미안보협력1과장, 한미안보협력2과장, 보건 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질병관리청장(검역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북방통상총괄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 관(미주통상과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제협력과장), 국토교통부장관(국제항공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 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영사서비스과 ^{전결 2021}.1.4.

강대성

외무사무관 **윤상지** 장

협조자

시행 영사서비스과-320 (2021. 1. 4.) 접수 신북방통상총괄과-27 (2021. 1. 5.)

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도렴동) / http://www.mofa.go.kr

전화번호 02-2100-8170 팩스번호 02-2100-7972 / sjyoon19@mofa.go.kr / 비공개(5)